정보자원 공유를 위한 문화유산기관 협력 방안

Cooperative Plans for Information Resource Sharing of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조 윤 희(Yoon-Hee Cho)*

초 록

문화유산기관들은 인류의 문화적 경험과 표현의 산물들을 기반으로 기관 및 지역을 넘어서는 협력망을 구성하여, 사회 구성원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도서관이 소장한 문헌 자원, 박물관이 소장한 유물 자원, 미술관이 소장한 예술품 자원, 기록관이 소장한 기록 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다양한 문화정보서비스의 창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기록관 등 문화유산기관의 협력 배경이 되는 관련법과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협력망과 통합형으로 북미 유럽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토대로 정책/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및 인적 측면의 문화유산기관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need to construct a cooperative network beyond an organization and a region based on products that cultural experiences and _expressions of human beings. They should serve as primary social agencies which need to create various information services of cultural heritage through integrated system management that social members are accessible to cultural contents such as _document resources of holding libraries, rich inheritance of museums, and works of art museums. This study indicated acts and considerable facts that have clauses the cooperative background of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which are libraries, museums, art museums and archives, and also intro! duced the cases of cooperative networks as an integrated system of libraries, museums, and art museums in North America and EU.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ed cooperative plans of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for political and systemic aspects, technical aspects, and human resource aspects.

키워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정보자원 공유, 협력방안, 협력
Library, Museum, Museum of Art, Information Resource Sharing, Cooperative Plan, Collaboration, Partnership

---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객원교수(libzone@hanmail.net)
논문접수일자 : 2008년 10월 18일 논문심사일자 : 2008년 11월 25일 게재확정일자 : 2008년 12월 10일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기록관 등 문화유산기관들은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문화유산 정보자원을 수집, 조직, 관리, 보존 및 유통을 통한 풍부한 정보서비스로 국민에게 문화적 소외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전 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관광부 2006)에 의하면 국민의 문화 향수 측정의 한 척도인 연간 문화시설 이용률이 41.9%, 연평균 이용횟수가 3.46회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중 도서관 이용률이 12.8%(2003년 16%), 박물관 12.3%(2003년 11.5%), 문화예술회관 11.3%(2003년 11.6%), 문화원 2.1%(2003년 2.4%)순으로 조사되었다. 박물관을 제외한 문화유산기관들은 2003년 조사보다 이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도서관 이용률은 3.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OCLC(2008)는 2005-2007년 웹 서비스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 검색엔진 이용 71%→90%(19% 증가), 온라인 서점 이용 50%→55%(5% 증가), 이-메일 이용 73%→97%(24% 증가), 블로그 이용 16%→46%(30% 증가)로 웹 서비스의 이용이 모두 증가한 반면 도서관 웹 사이트 이용률은 30%→20%로 2005년 대비 3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두 기관의 조사 결과는 최근 문화유산기관들이 다양한 서비스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이처럼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유산기관의 서비스가 이용자의 서비스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후라고 할 수 있다.

문화유산기관들은 인류의 문화적 경험과 표현의 산물을 통하여 기관과 지역을 넘어서는 연결망을 구성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서관이 소장한 문헌 자원, 박물관이 소장한 유물 자원, 미술관이 소장한 예술품 자원, 기록관이 소장한 기록 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다양한 문화서비스 창출로 전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해야 한다.

도서관법 제7조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1조에서는 공히 일반적인 원칙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정보자원의 공동 이용을 위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은 각 협력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다른 문화시설과도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문화유산 정보자원의 급증은 개별 문화유산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정보자원을 수집, 조직, 보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북미 유럽 국가들의 문화유산기관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유형으로 협력 활동을 확대하였고, 현재 자국 내 문화유산기관들간의 통합형에서 국가를 초월하는 국제적 체제의 통합형에 이르기까지 기관, 지역, 국가 및 언어의 벽을 넘어서는 다양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서관 협력망, 박물관 협력망 그리고 미술관 협력망을 각각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구축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다. 이는 관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

소한의 수준에 부합되는 활동 수준이다. 따라서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기록관 등은 서로 다른 유형의 문화유산기관들과 어떻게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유산 정보자원 공유를 위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기록관 등 문화유산기관의 협력 방안을 문헌 연구를 통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모형으로 추진되어 온 문화유산기관간의 협력 모형 사례를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그리고 통합형 모형으로 나누어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북미 유럽에서 구축된 통합형 문화유산 정보 버티컬 포탈 모형 검토를 기반으로 국내 문화유산기관의 정보자원 공유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술적, 인적 측면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현재 각각 독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유산기관 협력 활동의 조사와 문화유산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통합형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문헌 조사 방법에 의한 연구이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기록관 등 문화유산기관의 협력에 관한 포괄적 연구로서 협력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국내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기록관 등 문화유산기관의 협력 사례, 협력 방법과 그에 따른 우리나라 문화유산기관의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범위로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화유산기관 협력에 관한 이론적 배경이 되는 문헌적 조사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기록관 등 문화유산기관의 협력 사례를 문헌과 해당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정보 수집을 기반으로 분석한 후, 사례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국내 문화유산기관의 협력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협력의 의의

협력(cooperation)이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활동하는 것이다. 유사 개념으로 협업(collaboration)은 어떠한 것을 생산하거나 창안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작업하는 행위이고, 파트너십(partnership)은 두 사람 이상이 파트너로서 활동하는 연합체를 의미한다(Stevenson and Soanes 2005).

문화관광부(2007)는 도서관 협력 체계를 '비용 절감이나 효과성 증진 등을 위해 자원이나 부서 등을 공유하여 주어진 기능과 이용자 서비스 등을 수행하는 도서관간 또는 유사기관의 연합' 기구나 단체로 정의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2006)은 '박물관간 상호 협력 및 정보, 자원 공유로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Off-line 및 On-line 시스템을 총칭'하는 것으로 박물관 협력망을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의 일반적인 개념을 기반으로 도서관, 박물관계에서 정의하고 있는 협력의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인 광의의 협력 개념을 채용한다. 실제로 협력이란 단독으로 성

취하기 어려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활동하는 것으로써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나 조직들이 자율적 혹은 강제적 조정 노력을 통해서 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자원 공유는 문화유산기관들이 비용은 줄이면서 서비스를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협력 활동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러한 협력 활동은 공식, 비공식적 협정이나 계약에 의해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협력 모형으로 다양한 운영이 가능하다.

문화유산기관은 협력 활동을 통하여 문화유산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민들이 용이하게 문화를 향유할 있도록 풍부한 문화정보로의 접근성(accessibility)을 제고할 수 있다. 아울러 각 단위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조직의 규모와 관계없이 질 높은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관련 기관들의 연계된 정보 활용을 통하여 직원의 전문화를 유도하거나 불필요한 중복업무를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Bicchieri(1990)는 협력은 소규모 조직에는 정보가 체계적으로 잘 조직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대규모 조직에는 협력의 발전적 과정을 통하여 조직이 더욱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더 크도록 만드는 것이 협력이다. 따라서 문화유산기관들은 조직의 규모에 관계없이 협력 활동을 통하여 자원을 공유하고,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는 상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2 협력 배경 및 고려 사항

도서관법(2006) 제7조는 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정보의 공동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하며, 아울러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문화원・문화의 집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08) 31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관리 및 이용과 각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제로서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을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도서관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도서관・문화예술회관 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재용, 조윤희(2004)는 도서관과 박물관은 수 년 동안 협력적 측면에서 상당히 다른 전통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발전시켜왔지만,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공익적 목적을 공유하는 기관으로서 개별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은 그 이용자가 원하는 지식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제공할 수 있는 물리적 자족(physical self-sufficient)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보자원공유(information resource sharing)를 통한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문화유산 정보자원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로 다른 포맷의 메타데이터 간 상호운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 문화유산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타데이터 요소 간 상호참조표를 작성하여 사용하는 방법과 핵심적인 최소 수준의 메타데이터 요소의 사용을 권장하고 각 문화유산기관의 소장 자료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조윤희 2004).

조직의 문화나 자원 조직 방법이 서로 다른 문화유산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고려사항이 검토되어져야 한다. 첫째, 협력 활동에 대한 이중적 함축 의미의 해석이다. 하나는 일부 협력 기관들은 상호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혜택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다른 하나는 어떤 기관에는 이에 상충하는 희생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협력 기관간의 상충되는 이중적 의미를 완화하여 협력 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려면 상시 대화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협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협력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특정 기관과 전체 문화유산기관 간 목적에 관한 상충 관계이다. 이는 문화유산기관간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혜택이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이용자들을 비롯한 협력 관련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한 이상적인 모형이라 하더라도 고유한 영역과 명성을 갖고 있는 특정 문화유산기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협력 체제의 구축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협력 활동과 관련된 목표의 설정, 역할과 책임, 자원 할당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중앙 집중 혹은 지역 분산 등 협력 체제 구축 방법의 권한과 책임의 분배 방식에 대한 검토이다. 중앙 집중식은 하나나 몇 개의 기관에 관리나 통제의 권한을 모두 부여하는 방식이다. 분산은 지역 단위로 많은 기관에 관리나 통제의 권한을 분할하여 분배하는 방식으로 권한 이양과 상호 신뢰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중앙 집중과 분산의 상충적 관점의 핵심은 책임과 권한, 역할 분담의 적절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기반을 두어 한다.

넷째, 협력 활동을 결과 중심 혹은 과정 지향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이다.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문화유산기관간 협력 활동을 예산, 이용자, 직원 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결과물의 효과에 중점으로 둘 수 있다. 반면에 협력 활동 과정을 중점으로 기관간 차이를 조정하여 공유된 비전을 만드는 등, 업무 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효율성에 중점을 둘 것인가도 하나의 주요한 사안으로 고려되어져야 한다.

다섯째, 표준화의 방법적 측면에서 특정 기관이나 국내 표준 혹은 국제 표준에 근거하여 표준화를 추진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로 연결된 인터넷 서비스는 지구촌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하고 있다. 문화유산기관간 협력 체계를 제한된 자원과 감소되는 예산의 맥락에서 자원 공유의 방안으로 지역 고려사항에 중점을 둔 지역 표준으로 할 것인지 국제적 교류에 중점을 두고 자원을 공유하는 국제 표준에 중점을 둘 것인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려사항과 더불어 도서관과 기록관

등 문화유산기관의 협력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소로써 조직 문화의 차이와 기술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협력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조직 문화의 차이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없으므로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조직문화를 인정하고, 차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아울러 개별 자료 단위 메타데이터를 적용하면서 자료 간 연결 관계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도서관과 기록물 간의 맥락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계층구조화가 잘 발달되어 있는 기록관이 협력을 모색하려면 서로 다른 포맷과 논리로 조직화 되어 있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을 채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서혜란 2005).

Walker와 Manjarrez(2008)는 협력에 따른 위험관리의 전략으로 협력 프로젝트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협력 사업은 책임이 분명하고, 실행 가능한 사업 일정계획, 프로젝트 구성원들 간의 적절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의사결정과정이나 프로젝트 진행을 검토할 수 있는 선임 요원을 포함하여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Evans와 Saponaro(2005)는 자원공유를 위한 협력 활동은 추가적이거나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협력 없이는 해당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고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에 협력 체계 구축에 관여하는 기획자들은 상세한 협력 운영 방안을 도출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야 한다. 협력 체계를 통한 결과물을 하나로 보여 주는 시스템은 협력 기관들의 주요한 운영 변화에 기인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시스템이 협력 기관에 무엇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협력 활동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독립 기관으로서의 운영권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협력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사려 깊은 대화, 인내심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협력 활동은 정책적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2.3 선행 연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록관 등 각 유형별 협력 활동에 관한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었으나, 이들 문화유산기관들간의 협력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하다.

서로 다른 문화유산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선행연구로 박재용, 조윤희(2004)는 도서관과 박물관의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모형 개발 연구로서 자율방임형 상호교환 모형, 분산형 상호서비스 모형, 집중형 서비스센터 모형, 혼합형 공동관리모형을 제시하고, 물리적 한계를 넘어 무한대의 고품질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문화유산기관간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이 두 기관은 공익을 목적으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서혜란(2005)은 도서관과 기록관의 협력에 관한 연구에서 서로 다른 조직간의 협력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협력의 장애 요소로 조직문화의 차이와 기술적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외국의 협력 사례들을 유형별로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기록유산의 활용과 보존을 위한 도서관과 기록관의 협력으로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의사소통, 유능한 전문 인력 양성, 상호운용성

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윤정(2006)은 대학도서관과 대학기록관의 협력 모형을 소속유형과 업무 분야별 협력으로 구분하고, 수집, 보존, 전산화 입력, 연구활동 등 영역에서 협력의 효과가 큰 것으로 보았다. 협력을 통해 대학도서관은 학술, 연구, 오락 목적의 자료와 함께 다양한 교내 기록물을 이용자에게 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배정현(2007)은 디지털 문화유산콘텐츠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으로 국내외 문화유산기관의 협력 사례 조사와 국내 문화유산콘텐츠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으로 국가적인 차원의 조정전담기구의 필요성과 지역적인 차원의 지역문화유산기관들이 자발적인 협력 시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Yarrow 등(2008)은 도서관, 기록관, 미술관 및 박물관의 협력 동향을 통해 협력의 사례와 최고의 사례 선정, 성공적인 협력 단계, 이익과 위험, 위험관리 등을 언급하였다. 최고의 사례 선정 요인으로 생애학습(life-long learning)과 지역개발 지원, 서비스의 최적화, 지역자원의 국제적 접근성, 고객 확대, 문화유산 자료 보존의 중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성공적인 협력의 단계로 사전준비-계획단계-실행-평가-경험 공유의 5단계를 제시하였다.

3. 협력 모형 사례

3.1 도서관 협력망

도서관법(2006) 제7조는 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정보의 공동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문화의 집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2007) 제10조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협력 업무로서 국내외 각종 도서관과의 업무협력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도서관협력망의 운용을 명시하고 있다.

도서관 협력은 도서관간의 분담수서, 종합목록의 작성, 상호대차(관외대출 및 복사서비스 참여), 서지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 도서관 자원의 상호교환 및 공동 활용으로 도서관과 이용자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이며, 도서관협력망은 도서관들이 협력하여 이용자들의 정보접근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는 장치를 뜻한다(http://nl.go.kr/together/network/network.php).

우리나라 도서관 협력의 태동은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중 10개 기관이 '도서관 자료 이용 및 상호대차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한 1967년을 원년으로 보고 있다. 이를 계기로 지역별, 분야별 협력망이 구성,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그 예로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1963), 전국교육대학도서관협의회(1965),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1968),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1972),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1973),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1972),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1979), 대전・충남지역대학도서관협의회(1991) 등이 있다(http://nl.go.kr/together/network/network.php).

도서관 협력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기는 행정적 협약에 의한 유형별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협력 도서관간 종합목록을 발행하거나 부분적으로 상호대차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친목 도모의 수준으로 협력 활동이 유지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도서관법에서 도서관협력망을 정식으로 규정한 이후,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협력 사업을 시작하였고 1996년 '도서관 협력망 운영 계획 시안'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협력 사업이 추진되었다. 도서관 협력의 발전기라고 할 수 있는 1990년대 중반부터 각종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상호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공동목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 검색서비스 제공과 함께 상호대차와 원문복사서비스를 중심으로 협력체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공공도서관 협력망,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대학도서관 협력망, 분야별 특화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전문도서관 협력망 등이 있다.

1997년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앙관으로 16개 시·도 지역대표관을 거점으로 33개의 지방대표관, 487개 단위공공도서관을 연계하는 공공도서관 협력망은 도서관정보화사업, 종합목록 등으로 협력 사업을 지역별로 운영하며 매년 협력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2005년부터 협력망 운영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도서관 협력망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http://nl.go.kr/together/index.php).

2001년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협력망 협력 사업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의 범주를 종합목록 작성, 협동수서 및 공동보존, 상호대차업무, 협동참고봉사, 행정적 협력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협력망 활동은 구체적으로 도서관정보화 및 종합목록, 분담수서, 상호대차, 공동보존, 문화 프로그램 협력 및 공동홍보, 관외대출증 공유 및 복사카드 공유, 도서관 운영 관련 협정(협약)체결 등 7가지 범주로 구분, 시행하고 있다.

최근 한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법 전면 개정에 근거하여 공공, 대학, 학교, 전문도서관 간의 협력을 지원하는 체제로서 지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적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지역대표 도서관을 중심으로 협력 활동의 기반 조성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를 기반으로 2009년부터는 '함께 가는 도서관', '수요자 중심의 협력 서비스'를 비전으로 본격적인 전국적 도서관 협력 체계 구축이 시행될 예정이다(문화관광부 2007).

Sewell(1981)은 도서관의 협력 체제를 그 목적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보았다. 하나는 상호대차, 협동수서, 협동 서지통정 등 정보자원공유를 통한 접근성 제고의 협력 체제 시스템이다. 다른 하나는 도서관들이 소장한 정보자원에 용이한 접근을 통한 검색과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분산 네트워크를 기술적으로 통합하여 연계하는 협력체제 시스템이다. 전자는 도서관들이 공동의 사업을 통해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형식으로서 본부라는 조직구조를 필요로 하는 형식의 일종으로 전통적인 도서관 네트워크들의 협력체제가 대부분이 형식에 속한다. 후자는 인터넷과 같이 총괄하여 관리하는 특별한 조직 구조 없이 단지 필

요로 하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도서관을 포함한 여러 기관과 조직들의 정보자원을 컴퓨터망을 통해 상호 연결하는 형식의 협력체제이다. 이는 전략적 제휴를 통한 협력체제로서 시간적, 물리적, 지역적 제한이 없는 하나의 거대한 도서관을 형성할 수 있다.

3.2 박물관 협력망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박물관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 관리 및 이용과 각종 박물관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협력망을 구축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박물관 협력망은 국립민속박물관 주관으로 2002년 9월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을 구성하고 2005년 1월부터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 사업을 추진하였다.

한편, 2006년 11월 국립중앙박물관 중심으로 전국 16개 지역 대표관(국립 9관, 공립 7관)을 지정하는 박물관 협력망을 구성하였다. 2006년 12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이 각 협력망을 통합하는 정기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 및 역할 분담을 통한 박물관 협력망 추진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에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을 중앙관으로 시・도지사가 지역대표관을 지정하여 중앙관에 통보하는 체제로 협력 체계를 구성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2006)은 전국에 산재한 국・공・사립, 대학 박물관이 지역과 생활 관내의 핵심 문화기반시설로서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역내 박물관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박물관 협력망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온라인 협력망은 박물관 정보화와 자료 공유를 오프라인 협력망은 박물관간 협업과 분업을 목표로 중앙관-지역대표관-단위박물관 체제로 협력망 계층을 3분화한 모형으로 확정하였다.

박물관 협력망은 협력의 단위가 행정단위 중심으로 조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조화가 가능한 모형으로 협력망의 최소 단위 권역은 중앙 및 지방 정부가 협의하여 지정하고, 성격별, 기능별 박물관 협의체는 지역 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토록 유도하면서 현재 지역별로 구성되었거나 준비 중인 지역협의체는 최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 협력망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 협력망은 별도로 구축하지 않고 e-museum과 e-cluster를 활용하여 정보, 자료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2006년은 시범사업으로, 2007년은 사업대상을 145관으로 확대, 2008년에는 국・공립 및 등록 사립・대학 박물관 등 358개관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2009년에는 타문화기관과의 협력도 권장할 계획이다.

박물관 협력망 가입은 자율적 의사를 기반으로 추진하나 지역 내 일정 능력을 보유한 박물관을 협력망 내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토록 협약에 의한 가입을 병행하고 있다. 시설, 자료, 인력, 노하우 등 지역별 선도 박물관이 될 수 있는 박물관을 선정, 역할 부여, 지역대표관 업무 중 지역내 타 박물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일정 업무에 대해서는 협약을 통해 위임하며, 단위박물관이 협력망에 가입하는 방법은 지역대표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식이다.

해외의 사례로 프랑스는 문화부 산하의 26개

자치단체의 국(direction) 연합체로 구성된 문화활동지방국(DRAC: Directions Regionales des Affaires Culturelle)을 기반으로 지역별 박물관 협력망을 구축하고 있다. 지역 협력망 사례로는 바쓰 노르망디(Basse-Normandie)의 CReCET 협력망과 이제르(Isere)의 Ecoles Et Musees en Isere가 있다. 이들 협력망은 자발적인 참여 의사에 의한 협력 체계를 구성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된 조직이지만 독립적인 기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 협력망은 지역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다른 조직들과의 지역 특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국립중앙박물관 2006).

3.3 미술관 협력망

미술관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 작품을 수집, 보존, 전시, 연구 및 교육을 담당하는 문화유산 기관으로서 예술 작품을 매개체로 작가와 관람객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비평가, 화랑, 출판계, 학계 및 교육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의 문화적 맥락에서 역사적, 교육적, 미학적 목적을 달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미술관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 관리 및 이용과 각종 미술관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술관 협력망을 구축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등록 미술관(2007. 12. 31기준)은 국립 1개관, 공립미술관 24개관, 사립미술관 87개관, 대학미술관 3개관으로 총 115개 미술관이 운영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을 중앙관으로 지역대표관을 지정하는 방식의 미술관 협력망 구축에 관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다. 미술관 협력 사업으로는 소장품 상호 대여 체제, 통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적 자원 및 공간의 교류 방안, 소장품 및 인력 정보 등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국내외 미술관과 교류 및 협력 방안 등이 주요 협력 사업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술관은 협력망 구축에 관한 연구 결과를 근간으로 2009년부터는 미술관 협력망 구축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3.4 통합형 협력망

북미 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문화유산기관인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및 기록관 등을 통합하는 협력 체계 구축 사업을 시작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조직을 통합하거나 자원을 통합하는 통합형 협력 체제 구축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관점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기록관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의 특성이 유사하고, 조직의 기능이나 활동이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고 보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미국의 IMLS(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는 1996년에 설립되어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독립연방기관으로 미국 전역의 122,000개 도서관과 17,500개 박물관의 발전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는 조직이다. 미국인들에게 정보와 아이디어를 연결시키는 강한 도서관과 박물관을 만드는 데 조직의 사명을 두고 있다. IMLS는 "컬렉션으로 연결(connecting

to collections)"이라는 모토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기록관과 지역사회의 교육기관, 방송국, 민간기관 등도 포함하는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협력 기관들은 문화유산 자원공유를 기반으로 교육적 사명을 갖고 다른 기관과 협력 활동을 수행하면서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상생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http://www.imls.gov/collections/).

최근 IMLS는 미국 전역 776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기록관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문화유산건강지표(IMLS 2008)를 발표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보존조치가 필요한 대상물이 190만 건에 이르고, 수집기관의 65%가 부적절한 보관으로 자료가 손상되었고, 80%의 기관들이 소장품의 응급조치나 수집물을 처리할 전문 요원이 부족하고, 40%의 기관은 자료의 보존 처리에 필요한 연간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캐나다 LAC(Library and Archives Canada)는 2004년 도서관 및 기록관 설치에 관한 법률(Act to establish the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을 제정하여 국립 기록관(National Archives of Canada)과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Canada)을 통합하였다. 두 국가 대표기관의 합병은 캐나다의 문헌유산(documentary heritage)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문헌유산 자원의 수집과 보존, 그리고 국민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가장 효율적인 관리 방안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서지데이터베이스 AMICUS와 기록물데이터베이스 MIKAN을 통합하여 출판물, 기록자료, 동영상 기록, 사진, 예술작품, 전자 자원 등을 포함하는 AMICAN을 완성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http://www.collectionscanada.gc.ca).

영국의 MLA(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는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및 기록관 등을 지원하는 정부기관(government's agent)이지만 비정부공공기관(NDPB: Non-Departmental Public Body)으로써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받지만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운영기관이다. 이는 기존의 MGC(Museums and Galleries Commission)와 LIC(Library and Information Commission)을 통합한 조직이다.

MLA는 박물관, 미술관, 기록관, 도서관의 협력을 통하여 기관들이 소장한 자료와 서비스를 모든 국민들이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http://www.mla.gov.uk/).

MLA는 인증(국제 박물관 기준을 충족), 기록관을 지원하는 활동, 문화 자산(상속세 대신 유물을 납부하는 Acceptance in Lieu제도), 지정(사립 기관 소장 문화유산 지원), 미래를 위한 구상(새로운 협력 모형 개발), 학습 고무(기관 직원을 포함하여 모든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 도서관과 장애인(장애인 서비스 지원), 사람들의 네트워크(전문가와 이용자를 연결), 휴대용 고미술품(협력을 통한 유물데이터베이스), 르네상스(지역 박물관 활성화) 등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http://www.mla.gov.uk/programmes/).

유럽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 지원의 MICHAEL(Multilingual Inventory of Cultural Heritage in Europe) 프로젝트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및 기록관을 통합하는 유럽 국가들의 문화유산정보 통합 프로그램이다. MICHAEL 유럽서비스는 협력 프로그램에 참

여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및 기록관 등이 구축하고 있는 디지털 자원을 통합하는 단일 접근점을 제공하고 있다.

2006년 봄 MICHAEL plus로 명명하고, 불가리아, 체코, 이스토니아, 필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말타, 이태리, 라트비아,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그리고 영국 등 17개국 문화유산정보를 16개 국어로 이용할 수 있는 다중언어기반 문화유산자원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http://www.michael-culture.org/). 이들은 협력기관의 이용자들이 자국의 언어로 MICHAEL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언어로 된 자료를 번역하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키워드 검색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함께 디지털 자원은 주제별, 지역별, 기간별로 기관정보는 기관유형과 지리적 위치를 통한 검색이 가능하다. 서비스 메뉴로는 이용자그룹, 주제, 지역별, 기간별로 구분하여 디렉토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World Digital Library Project는 2005년 LC의 Billington, James H.에 의해 제안되고, Google의 기부금으로 기획이 진행되는 현재 22개 기관이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는 협력 프로그램이다.

WDL은 필사본, 지도, 희귀본, 악보, 녹음자료, 필름, 인쇄물, 사진, 건축도면과 기타 중요한 문화적 자료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 문화를 통해 생성되는 중요한 자료를 다언어지원을 기반으로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WDL은 국제간, 문화간 이해와 인식을 증진시키고, 비영어권과 비서구권 자료를 인터넷으로 확장시켜 교육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학술연구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WDL 2006).

4. 협력 방안

4.1 정책/제도적 측면

Evans와 Saponaro(2005)는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활동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로 정책적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문화유산기관의 협력에는 반드시 정책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북미 유럽의 사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기록관 등 문화유산 자원 공유를 통한 통합서비스 형태로서 버티컬 포탈(vertical portal)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 모형이 공통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적, 국가적 영역을 넘는 협력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 캐나다, 유럽의 사례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독립적인 전담운영기관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네스코 헌장(2003)은 각국이 자국의 문화유산정보를 보존하기 위하여 조정전담기구를 설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국립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및 기타 공공 문화유산 기관과 함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발행자, 운영자, 배포자 등도 함께 협력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기록관 등 문화유산기관들의 자원공유를 위한 협력 활동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록보존소,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및 그 외에도 많은 유관기관의 행정적, 제도적 협의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제도적 체제하에서 문화유산기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원을 공유하여 기존의 서비스와 함께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합의에 이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기록관 등 문화유산기관이 자원을 공유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MLA와 미국의 IMLS의 사례에서와 같은 독립적인 운영기구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동시에 보장되어야 한다.

어떠한 정부 부처나 조직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운영기구와 재정적 지원이 기반이 되는 문화유산기관의 협력은 국내 문화유산정보의 공유와 활용 보존은 물론 유럽 국가들과 유사한 아시안 국가들을 연계하는 아시안 협력망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다.

4.2 기술적 측면

문화유산 자원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기록관 등 그 소장 기관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자원을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자원을 한곳에 모을 수 없고 분산되어 있는 일반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신 정보기술의 발전은 문화유산기관에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자원을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자원을 통합하여 공유할 수 있는 상호운용성 확보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각 문화유산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메타데이터는 그 자료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포맷이 사용되고 있다. 도서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메타데이터 포맷으로는 FRBR(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MARC(MAchine-Readable Cataloging), DC(Dublin Core),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맷으로는 CDWA(Categories for the Description Works of Art), Object ID, VRA(Visual Resources Association) Core 등이 있고, 기록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맷으로는 EAD(Encoded Archival Description)와 ISAD(G)(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유형의 메타데이터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메타데이터 요소 간 상호참조표를 작성하여 사용하는 방법과 표준 포맷을 결정하여 핵심적인 최소 수준의 메타데이터 요소의 사용을 권장하고, 각 문화유산기관의 소장 자료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통제 어휘로서 사용되고 있는 주제명 표목표나 시소러스로는 도서관의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국회도서관 시소러스, 교육학술정보 시소러스, 법률 시소러스, 과학기술 시소러스 등, 박물관 및 미술관의 AAT(Art and Architecture Thesaurus), ULAN(Union List of Artist Names), TGN(Thesaurus of

Geographic Names), 기록관의 IPTC 시소러스, ISAAR(CPF), UK Archival Thesaurus 등이 있다. 이들 주제명 표목표와 시소러스를 색인과 검색에 어떻게 적용하여 서비스 할 것인가 검토되어야 한다.

대용량의 통합형 문화유산정보 서비스를 위해서는 고품질의 통제어휘로 구성된 시소러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단기간에 이를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통제 어휘와 통제어휘를 함께 고려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색인어 선정 지침, 기존 색인 어휘 참조 및 추천 시스템, 폭소노미 도입 등 잠정적인 기존 시소러스 활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소러스 시스템 구축 시에는 인명, 단체명, 지명, 주제명 등 전거통제 정보와의 연계부분도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디지털화에 따른 텍스트, 이미지 및 동영상 등의 표준 지침도 함께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통합형 문화유산 정보 제공 모형에 있어서도 현재의 각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통합검색을 지원하는 게이트웨이 방식의 통합시스템과 하나의 통합시스템에 문화유산 정보를 기록, 보존,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형의 방식에서 링크를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보로 연계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4.3 인적 측면

IMLS(2008)의 문화유산건강지표에서 조사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80%에 이르는 문화유산기관에서 전문 요원이 부족하여 소장품의 응급조치나 수집물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데이터가 조사되지는 않았지만, 더욱 심각하리라 예측된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기록관 등은 지금까지 상호 협력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서로 다른 조직 문화를 가진 조직이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자료의 유형과 조직 방법은 다르지만, 문화유산 자원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전 국민의 문화 향유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익 목적의 기관임을 알 수 있다.

이들 문화유산기관들이 문화유산 정보자원 공유의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대상 자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함께 상호 대여/대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 큐레이터, 학예사 및 기록관리사 등이다. 이들 전문직의 의사소통과 관련 업무 영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협력 활동이 본래의 의도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유산기관의 협력 방안으로 앞서 언급한 정치적, 제도적 그리고 기술적 측면 못지않게 인적 자원의 개발에 대한 투자는 협력 체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핵심 요소이다. 인적 측면의 투자는 전문적인 영역의 계속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서로 다른 유형의 자원을 이해할 수 있는 공동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화유산기관들의 공통 관심 주제에 관하여 컨퍼런스를 개최하거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도 하나

의 방법이다.

인적 자원의 개발을 통한 상호 이해와 풍부한 의사소통은 문화유산기관간의 단순한 협력 활동을 넘어서 새로운 서비스로 국민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여 새로운 문화유산 정보를 생산하는 문화유산 정보의 순환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다. 모든 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5. 결론 및 제언

북미 유럽의 문화유산기관 협력 활동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기록관 등 관리되고 있는 자원의 특성이 유사하고, 조직의 기능이나 활동이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기록관 등 문화유산기관들은 서로 상당히 다른 조직 문화와 정보 조직 방법을 사용하여 자원을 조직하고, 서비스하여 왔다. 이러한 문화유산조직들이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첫째, 협력이 지니는 함축적 의미의 상충관계로서 협력을 통한 혜택과 희생에 대한 상충적 의미의 완화를 위한 협의 노력이다. 둘째, 개별 협력기관과 전체 협력기관의 목적에 대한 상충관계로 목표의 설정, 책임과 역할의 분담, 자원 할당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셋째, 중앙 집중과 지역 분산의 협력 방식에 대한 고려사항으로서 관리나 통제의 권한과 책임 이양에 대한 역할 분담의 적절성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협력 활동을 결과 중심 혹은 과정 지향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 사항으로 최종 결과물의 효과성과 업무 과정의 개선을 통한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표준화에 있어 특정기관이나 국내 표준 혹은 국제 표준의 채택과 관련한 고려 사항이다.

아울러 북미 유럽 국가들의 사례에서 나타난 통합 방법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미국과 영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재정적 지원을 통한 정책적 유도 방안으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기록관 등 문화유산기관을 지원하는 별도의 새로운 독립적 운영기구를 창설하는 방안이다. 둘째, 캐나다의 사례에서와 같이 서로 관련된 핵심 국가대표기관 자체를 통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조직을 탄생시키는 조직을 통합하는 방안이다. 셋째, 유럽과 WDL의 사례에서와 같이 대규모 재정적 지원을 통해 하나의 프로젝트로 단일 접근점(single point of access)을 통하여 모든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정보자원 공유를 위한 문화유산기관 협력 방안에 대한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유산기관의 협력은 정책적 과정으로써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기록관 등이 소장한 자원을 통합하여 서비스하는 협력은 정부 부처나 특정 조직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와 재정적 지원이 기반이 되어야 가능한 사업이므로 이를 위한 전문가들의 검토와 합의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웹서비스는 정보의 형태나 소장기관, 지역 및 국가를 넘어서는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이용자는 특정사이트에서 용이하게 한 번의 검색으로 모든 정보를 찾기를 원한다. 이러한 이용자의 기대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문화유산기관간의 협력은 필수이고 최선의 선택이다.

셋째, 협력은 개별 문화유산기관에 더 많은 컬렉션과 더 많은 이용자를 얻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문화유산기관들이 정보자원을 수집, 조직, 보존 및 이용을 넘어 새로운 정보의 창출에 기여하는 매개자로서의 기능을 추가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정보는 정보의 형태나 소장기관, 지역, 국가에 제한되지 않고 더 많은 이용자를 찾아 나서야 한다. 더 많은 정보로 더 많은 이용자를 찾아가려면 협력이 최선의 방법이다.

참 고 문 헌

국립중앙도서관. 2008.『2007 도서관협력망 운영실태 자료집: 공공도서관』. [online].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online]. 〈http://nl.go.kr/together/index.php〉.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협력망. [online]. 〈http://nl.go.kr/together/network/network.php〉.

국립중앙박물관. 2006.『박물관 협력망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2006. 박물관 협력망 구축, 운영 현황.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김세훈 등. 2007.『지역대표 도서관 기반조성 및 운영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6.5 대통령령 제20797호]. [online]. 〈http://www.klaw.go.kr/DRF/link_sframe.jsp〉.

도서관법. [일부개정 2006.12.20 법률 제8069호]. [online]. 〈http://www.klaw.go.kr/DRF/link_sframe.jsp〉.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문화향수실태조사』.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관광부. 2007.『전국적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서울: 문화관광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6호]. [online]. 〈http://www.klaw.go.kr/DRF/link_sframe.jsp〉.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호]. [online]. 〈http://www.klaw.go.kr/DRF/link_sframe.jsp〉.

박재용, 조윤희. 2004. 도서관/박물관 협력체제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2): 315-333.

배정현. 2007.『디지털 문화 유산 콘텐츠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서혜란. 2005. 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도서관과 기록관의 협력.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6(2): 25-41.

이윤정. 2006. 『대학도서관과 대학기록관의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조윤희. 2004. 문화콘텐츠 통합을 위한 메타데이터 포맷 연구(II):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3): 201-219.

Bicchieri, C. 1990. Norms of cooperation. *Ethics*, 100: 838-861.

Breeding, Marshall. 2002. The Benefits of library partnerships. *Information Today*. 19(6): 42-43.

Evans, G. Edward and Margaret Zarnosky Saponaro. 2005. *Developing library and information collections*. 5th ed. London: Libraries.

Yarrow, Alexandrea et al. 2008. *Public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trends in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IFLA.

IMLS. 2007. Connecting to Collection. [online]. 〈http://www.imls.gov/collections/〉.

IMLS. 2008. *Heritage Health Index*. [online]. 〈http://www.heritagepreservation.org/HHI/full.htmla〉.

LAC. Library and Archives Canada: about us. [online]. 〈http://www.collectionscanada.gc.ca/〉.

MLA. About us. [online]. 〈http://www.mla.gov.uk〉.

MLA. MLA programs. [online]. 〈http://www.mla.gov.uk/programmes/〉.

OCLC. 2008. WorldCat local: taking your library to users on the web. [online]. 〈http://www.oclc.org/worldcatlocal/overview/websessions.htm〉.

Sewell, P. H. 1981. *Resource sharing: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i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London: Andre Deutsch.

Stevenson, Angus and Catherine Soanes. 2005. *Oxford dictionary of Englis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UNESCO. 2003. The UNESCO draft charter on th preservation of the digital heritage. [online]. 〈unesdoc.unesco.org/images/0013/001300/130071e.pdf〉.

Walker, Christopher and Carlow A. Manjarrez. 2002. Partnerships for free choice learning: public libraries, museums and public broadcasters working together. [online]. 〈http://www.urban.org/UploadedPDF/410661_partnerships_for_free_choice_learning.pdf〉.

WDL, 2006. World digital library. [online]. 〈http://www.worlddigitallibrary.org/project/english/index.html〉.